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研究所
比較法學 第19輯(2008)

한·미 FTA 환경협정의 내용과 이해

조 은 래*

<목 차>

- I. 서설
- II. 한미 FTA 환경협정의 내용
- III. 한미 FTA 환경협정내용의 이해
- IV. 결어

I. 서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국관세와 각종 수출입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를 따르는 형태로서 EU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자국의 관세제도나 수출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사이에서만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형태로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라 약칭함)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다. 전자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기조로 하는데 비해, FTA의 경우 양자주의를 택해 협상 당사국 혹은 협상지역국가들만의 무역특혜를 목적으로 한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2 比較法學 (第19輯)

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¹⁾ 이러한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의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²⁾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약칭함)³⁾을 2006년 2

1)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7. 4.

2)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index.html> ; FTA의 추세에 관하여는 박근수,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지역사회地(통권 제54호),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6. 11, 23면 이하 참조.

3) FTA는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는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 불리기도 한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로는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등이 있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보도자료 참조. <http://www.fta.go.kr/user/>

월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한지 16개월만인 2007년 6월 30일에 한미 양국정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체결하였다. 한미 FTA는 세계무역자유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한미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심화, 발전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통상교섭본부장은 말한다.⁴⁾ 현재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양국 국회의 검증과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⁵⁾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무역이 증진되고, 산업이 발달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으나, 환경협상은 FTA로 인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간 환경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자(WTO/DDA) 및 양자(FTA)간 자유무역협정에서 FTA의 환경친화성 확보를 위해 환경협정문을 포함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미국도 무역진흥법(TPA)에서 FTA에 환경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현재까지 체결한 모든 FTA(NAFTA, 싱가포르, 호주, 칠레, 바레

4) 한미 FTA는 경제협정이면서도 동시에 고도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가진 협정이라고 한다.

5) 전창환, “한미 FTA 협상 결정의 배경과 그 과정”, 동향과 전망(통권 67호), 한국사회 과학연구소, 2006. 6, 170면 ; 김영한, “한미FTA - 그 본질과 허상”, 철학과 현실(통권 제71호), 철학문화연구소, 2006. 12, 105면 -107면 참조.

4 比較法學 (第19輯)

인, 모로코 등)에 환경부문을 포함하였다. FTA는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로 칠레, 싱가폴, 아세안,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에서 환경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 환경협상은 친환경적 FTA 체제 마련을 위한 키워드라고 환경협상의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다.⁶⁾

환경협상분야는 크게 환협력 및 협정문에 관한 협상과 전체 서비스 협상의 일부로 환경서비스 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환경협정문(chapter) 협상은 양국의 수준 높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환경정책의 자주성 인정, 환경협력 사업의 시행 등 양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상향조화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이다. 환경서비스 협상은 금융, 법률 등 일반 서비스시장개방과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폐수 및 폐기물 처리, 대기 및 소음저감, 위생, 환경영향평가, 환경컨설팅 등 민간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협상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7년 6월 30일 최종 타결된 환경협정의 내용은 협정문 제20장에서 총 11개조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환경협정의 내용이 향후 한미 FTA 협정이 승인된 이후,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요컨대 한미 FTA의 체결은 국내외 많은 어려움을 동반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둘러싼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가 요망된다.⁷⁾ 이 글에서는 한미 FTA와

6) 환경부, 보도자료, 2006, 6.

7) 한미 FTA의 추진배경은 미국의 한미 FTA 자체의 경제적 실익이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미국의 가능한 국가별, 지역별 FTA 경제효과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듯,

환경협상(Chapter 20)에 범위를 한정하여 각 조항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미 FTA 환경협정의 내용

1. 한미 FTA 환경협상의 배경과 쟁점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각국의 FTA는 자유무역의 확대와 병행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규범⁸⁾을 포함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는 환경협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캐나다, 한·EU FTA 등에서도 환경협정의 체결을 추진중에 있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타결의 선언 이후에 기존 합의에 보다 강화된 환경 및 노동 규범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미국의회의 입장에 따라 양국 정부는 2차례의 추가협의를 통해 보다 강화된 환경보호장치를 가진 한미 FTA 협정문을 탄생시켰다. 정부가 2007년 5월 25일에 타결된 환경협정문을 공개하였으나 6월 30일에 최종 타결된 협정문에는 제2조가 신설되는 등 구체화된 내용을 추가하는 다소의 변경이 있었다. FTA에 환경문제

한미 FTA는 APEC과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인 전미주 FTA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한, 양자간 FTA 가운데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장 높은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 FTA가 예상 가능한 각종 FTA 가운데 가장 실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한국은 한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한중 FTA를 통해 가장 높은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된다. 반면 한미 FTA의 경우 거대 경제권과의 가능한 FTA 가운데 -27.37%로 가장 낮은 산업생산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산업생산효과만을 기준으로 볼 때, FTA 우선순위국가는 중국, EU, 미국, 일본인 것이다.

8) 우리나라의 헌법상 환경권 조항을 두어 환경보전을 위한 최고의 규범으로 환경법의 지도원리로 파악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金哲洙, “環境權考”, 헌법논총 제6집, 헌법재판소, 1995, 75면.

6 比較法學 (第19輯)

가 핵심의제로 부각되어 추가협의까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다소 생소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으나, FTA가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환경의 보호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발전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논의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⁹⁾

기존에 합의된 협정문은 주로 국내 환경법의 철저한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 구성되었으나, 추가협의를 통하여 “습지보호를 위한 립사협약” 등 7개의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철저한 이행의무가 추진되었다. 즉 한미 FTA는 양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환경조약상의 의무이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 국내의 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하고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국내 환경법뿐 아니라 국제 환경법의 이행의무를 천명해 친환경적인 FTA를 실현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무역과 투자유치를 위해 환경보호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하였다. 다시 말하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상 환경보호를 약화·저해하는 방법으로 환경법 적용을 면제·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¹⁰⁾ 이는 자유무역과 투자는 촉진하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¹¹⁾ 그리고 추가협의로 인해 변경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것이다. 환경협정문상의 의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이행수단을 확보하는데 합의하였는데, 즉 환경 Chapter상의 의무위반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9) 환경의 개념에 대하여는 넓은 의미로서의 환경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환경에는 다시 생활환경과 물리적 인공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로서의 환경이란 환경영책기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의미한다. 조은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3, 17면.

10) 예를 들면 한미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상대방 국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대상 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엔 한미 FTA 환경조항의 위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도 무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가 희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하게 된다.

11) 이규용, “환경보전과 한·미 FTA 협상”, 아시아 경제신문, 2007. 7. 10, <http://www.akn.co.kr>

적용하기로 하여, 환경협의회 또는 분쟁해결 패널은 해당 다자환경협약상의 결정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며, 단, 양국은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환경투자협상과 관련하여 투자자 국가제소제도¹²⁾ 특히 “간접수용”¹³⁾이라는 개념의 인정이 대한민국 헌법 해석상 수긍되는 것인지, 또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의 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 등이 쟁점이 되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판매하는 휴빌류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제작 자동차의 경우와 달리 완화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바, 정부는 자동차는 한미간 교역불균형이 가장 큰 동시에 FTA 채결 시 수출증대 등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가장 큰 분야로 미국의 자동차 관세조기철폐를 관철시키기 위해 일정부분의 양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었다.¹⁴⁾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서문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와 미합중국 정부(“미합중국”)는, 양국의 오

- 12)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예를 들어 미국투자자가 국내 상권에 유통매장을 마련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상가들의 영업손실을 우려해 설립허가를 거부할 경우 내외국인 차별금지 등의 이유를 들어 중재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투자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 13) 간접수용이란 소유권 이전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부조치, 즉 정부의 공적규제로 투자자의 재산권이 간접적으로 침해받아도 투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간접수용의 경우 미국투자자가 국내 모처에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었고 우리 정부가 부동산안정화정책 차원에서 규제, 투자가 개발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소할 경우 정부는 즉시 현시가로 보상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내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역차별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없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다.
- 14) 한미 FTA 협정문 분석보고서4, “한미 FTA 환경분야평가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료집, 2007. 6. 26, 211면.

랜 그리고 강한 동반자관계를 인정하고,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그들의 영역에서 확장되고 확고한 무역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창출하여 그들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역에서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 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호혜적인 규칙의 제정과 양국 영역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추구하면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 영역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노동 및 환경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이 협정을 환경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를 추구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도력을 증진하기를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3. 한미 FTA 환경협상의 내용

1) 제20.1조(보호수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자국의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환경법 및 책을 통하는 것을 포

함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2) 제20.2조(환경 협정)

당사국은 부속서 20-가에 기재된 다자간환경협정(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이행한다(제20.2조 위반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적용대상 협정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제20.2조의 목적상, (1) “적용대상 협정”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관련 협정상의 그러한 기준 또는 미래의 의정시, 개정, 부속시 및 조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2) 당사국의 “의무”는 특히 관련 협정상 그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기준 및 미래의 유보, 면제 및 예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제20.3조(환경 법의 적용 및 집행)

1. 가.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 그리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기초상의 재량을 행사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된 그 밖의 환경법에 대하여 환경집행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유지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환경법, 그리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모든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 과정이 그러한 재량의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선의의 행사를 반영하거나 그러한 자원 배분에 관한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선의의 결정의 결과인 경우, 당

사국이 가호를 준수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용대상 협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작위 또는 부작위 과정이 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에 관련되는 경우, 그것은 자원배분이 합리적이고 선의의 것인지 여부에 관한 1) 목에 따른 결정에 관련성이 있다.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어떠한 당시국도 양 당시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은 당시국이 면제 또는 이탈을 규정한 자국의 환경법 규정에 따라 환경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이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면제 또는 이탈은 적용대상 협정상의 그 당시국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시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시국의 영역에서 환경법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20.4조(절차문제)

1. 각 당시국은 자국 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당시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자국 환경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2. 각 당시국은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절차가 자국의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 법에 따라 이용가능할 것과 특정한 사안에 있어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그러한 절차에 적절한 접근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각 당시국은 자국 법에 따라

다음을 보장한다. 1) 그러한 절차가 공정·공평·투명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그리고 2) 그러한 절차가 법 운영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 공개될 것 나.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재심하는 재판소가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에게 자국 환경법 위반이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자국 법에 따른 법적 의무의 위반을 제재 또는 구제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자국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다른 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나. 어떤 인이 자국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다른 인의 행위의 결과로서 손실·손해 또는 상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는 경우, 금지명령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 다. 금전적 벌칙, 긴급 폐쇄, 활동의 일시적인 정지 또는 그러한 위반의 결과를 완화하는 명령과 같은 제재 또는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라. 환경을 보호하거나 환경적 위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의 환경법을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적용 가능한 경우, 재판소가 이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각 당사국은 자국 환경법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재 또는 구제를 제공한다. 가. 적절한 경우, 위반의 성격 및 경증, 위반자가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 위반자의 경제적 조건,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요소를 고려한다. 그리고 나. 준수협약, 벌칙, 벌금, 수감, 금지명령, 시설폐쇄, 그리고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오염의 억제 또는 제거 비용을 포함하여 환경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하는 요구와 같은 행정·민사 및 형사적 제재와 구제를 포함할 수 있다.

5) 제20.5조(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메카니즘)

1. 양 당사국은 유연하고 자발적이며 유인에 기초한 메카니즘이 제20.4

조에 규정된 절차를 보완하면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의 달성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적절한 경우 그리고 자국 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메카니즘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한다.

가. 환경을 보호하거나 증진하는 자발적 조치를 촉진하는 다음과 같은 메카니즘 1) 사업자,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정부기관 또는 과학단체가 관여한 파트너쉽 2) 환경성과를 위한 자발적 지침, 또는 3)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자발적 환경 감시 및 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환경영향을 감소시키는 방안, 환경 점검, 그리고 기초자료 수집에 관하여 당국· 이해당사자 및 대중간의 정보와 전문성의 자발적 공유, 또는

나. 환경성과가 우수한 시설 또는 기업에 대한 공공의 인정이나 환경 목표 달성을 돋기 위한 허가거래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수단과 같이, 천연자원과 환경의 보전·복원 및 보호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적절한 경우 시장에 기초한 것을 포함하는 유인

2. 적절하고 실현가능한 경우 그리고 자국 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을 장려한다. 가. 환경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성과 목표 및 기준의 유지·개발 또는 개선, 그리고 나. 제1항에서 확인된 메카니즘을 포함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연한 수단.

6) 제20.6조(제도적 장치)

1. 양 당사국은 환경협의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협의회는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의 각 회의는 제20.7조 제3항에 언급된 국가자문위원회들로부터 접수된 견해를 포함하여 협의회의 구성권이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중과 회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

는 회의시간을 포함한다. 협의회는 공개 회의시간 동안 이루어진 논의의 서면 요약을 공개한다.

3. 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의 의제 개발에 있어 대중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과 대중이 관심을 갖는 환경문제에 관하여 대중과 대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업무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증진한다.

4. 협의회는 양 당사국이 설립한 환경협력 메카니즘을 포함하여 대중이 환경협력활동의 개발 및 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추구한다.

5. 협의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의 공식 결정은 공개된다.

7) 제20.7조(대중 참여기회)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인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자국 환경법 위반 주장을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환경법과 환경법 집행 및 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자국의 환경법에 대한 대중 인식을 증진한다.

2. 대중 참여기회가 최적 관행의 공유와 대중의 관심 문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법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의 정보에 대한 요청을 수용하거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이 장의 이행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나. 이 장의 특정 조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서면 입장문을 접수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국내절차에 따라 이러한 입장에 응답하고, 그 입장 및 자국의 응답이 대중에게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견해를 구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환경 사안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여 관련 경험을 가진 그 당사국 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가자문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기존의 국가자문위원회와 협의한다. 협의회는 회합할 때마다 각 당사국이 이 장의 이행

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자국의 국가자문위원회로부터 접수한 견해를 검토한다.

4.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에 있어 대중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과 이 조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을 양 당사국이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이 협정의 발효 1주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의 이행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 결과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협의회는, 협의회가 그러한 각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시점에서 그 보고서를 공개한다.

8) 제20.8조(환경협력)

1. 양 당사국은 환경을 보호하는 양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 당사국간 무역 및 투자관계 강화에 조화되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환경사안에 대한 양자·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양 당사국간 협력이 환경 보호·관행 및 기술의 개발과 증진을 포함하여 공동의 환경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로 약속한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환경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협정(환경협력협정)에 따라 환경협력 활동을 수행하기로 약속한다. 양 당사국이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은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설립된 이행기구에 의하여 조율되고 검토될 것이다. 양 당사국은 또한 그 밖의 포럼에서의 협력적인 환경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장과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협력 활동에 관하여 자국이 접수하는 대중의 의견 및 권고를 고려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무역 협정 및 정책의 긍정적 및 부정적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다른 데에 대한 자국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 및 대중과 공유한다.

9) 제20.9조(환경 협의 및 패널절차)

1.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접촉선에게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는 그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응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협의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2.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하며,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다. 사안이 제20.2조에서, 또는 그 조와 이 장의 다른 규정의 양쪽에서 발생하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 가능한 협의 절차, 또는 관련 협정에 있는 경우, 그 밖의 절차를 통하여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그 절차는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양 당사국은 제2항의 목적상, 적용대상 협정에서 결정이 컨센시스(합의)로 내려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양해한다).

3. 협의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가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신속하게 회합하며, 적절한 경우, 정부 또는 그 밖의 전문가와 협의하고 주선·조정 또는 중개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사안이 제20.2조에서, 또는 그 조와 이 장이 다른 규

정의 양쪽에서 발생하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때에는, 협의회는 가. 협의회가 설치하는 메카니즘을 통하여, 관련 협정에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권한을 받은 모든 실체와 충분히 협의한다. 그리고 나. 그 당사국의 관련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가 그 협정상의 그 당사국의 의무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그 성격 및 지위에 비추어 적절한 한도에서 그 협정상의 그 문제에 대한 모든 해석상의 지침을 따른다.

4. 양 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문제제기 당사국은 제22.7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거나 제22.8조(공동위원회 회부)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제22장(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에서 규정된 대로 그 장의 다른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6. 제20.2조(환경협력)에서, 또는 그 조와 이 장의 다른 규정의 양쪽에서 발생하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분쟁에서, 제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에 따라 소집된 패널은 제22.11조(패널 보고서)에 따른 조사결과 및 판정을 힘에 있어(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협의 및 지침은 제22.10조제4항(절차규칙)과 합치되게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패널의 능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가. 협의회가 설치하는 메카니즘을 통하여, 관련 환경협정에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권한을 받은 모든 실체와 그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한다. 나. 그 당사국의 관련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가 그 협정상의 그 당사국의 의무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그 성격 및 지위에 비추어 적절한 한도에서 그 협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석상의 지침을 따른다. 그리고 다. 그 협정

이 그 분쟁의 어느 한 문제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허용가능한 해석을 용인하고 피소 당사국이 그러한 하나의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제22.11조에 따른 조사결과와 판정의 목적상 그 해석을 수용한다(다 호의 지침은 그 밖의 어떠한 해석지침보다 우선한다).

10) 제20.10조(다자간환경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일정 다자간환경협정들이 환경보호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이 장과 환경협력협정(ECA)이 그러한 협정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무역협정간의 상호 지지를 증진시키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호 관심 있는 환경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협의한다.

3.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적용대상 협정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양 협정상의 자국 의무의 균형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는 그 당사국이 그 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조치의 주요 목적은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은 적용대상 협정이 아닌 다자간환경협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11) 제20.11조(정의)

이 장의 목적상, 환경법이라 함은 당사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다음을 통하여 환경보호 또는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을 말하나, 근로자 안전 또는 건강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오염원 또는 환경오염물질의 방출·방류 또는 배출의 방지·저감 또는 통제 나.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유독한 화학물질·물질·재료 및 폐기물의 통제와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전파, 또는 다.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야생 식물 또는 동물, 그 서식지, 그리고 특별히 보호되는 자연지역의 보호 또는 보전.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라 함은 단사국의 중앙정부의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법 또는 규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 한 국회의 법 또는 국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 한 의회의 법 또는 의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말한다.

III. 한미 FTA 환경협정내용의 이해¹⁵⁾

1.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의무

협정문 제20.1조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 규정으로서 환경보호수준 및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 및 수정하는 각 국가의 주권적 권리인 인정함으로써 환경주권에 대한 침해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할 수 있다.

15) 이하는 2007년 4월 4일 환경부의 보도자료, “한미FTA 환경협상결과 및 향후대책”과 2007년 5월 관계부처합동에서 공개한 “한미FTA 상세설명자료” 248면-259면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2.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협정문 제20.3조 제1항 제4항에서는 한·미 양국간 환경법의 집행력 차이가 양국 기업의 경쟁력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를 규정하였다.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란 당사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한·미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시 분쟁해결절차에 희부토록 하였다. 단, 상기 작위 또는 부작위 과정이 각 당사국의 지도단 속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한 경우이거나, 환경법 집행을 위해 신의성 실에 따라 지원을 배분한 결과인 경우,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이라는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이해한다.

3. 무역 및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보호수준완화의 금지

협정문 제20.3조 제2항 제3항에서는 한·미 양국간 무역을 장려하거나, 자국에 투자 설립·인수·확장 또는 유지를 위한 장려책으로 기존의 환경 보호 수준을 완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합의하였다. 이 의무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의무”와 함께 FTA체결로 인한 무역자유화가 산업경쟁력에 압력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환경기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할 수 있는 우려를 제거하여 한·미 양국의 환경보호수준을 상향 조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4. 절차적 보장

협정문 제20.4조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인은 국내법에 따라 환경법 위반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환경법 위반시 제재 및 구제를 위한 사법·준사법·행정절차를 보

장하고, 관련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인이 동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인은 ① 손해배상소송 ② 금지명령 ③ 금전적 벌칙, 긴급폐쇄, 활동의 일시적 정지 등 제재 및 구제 청구가 가능하다.

5.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자발적 메커니즘 개발

협정문 제20.5조에서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해 국내법에 따라 자발적이며 인센티브에 기초한 아래와 같은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그 사용을 장려토록 하였다. 즉 사업자,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정부기관 또는 과학단체가 관여한 파트너쉽, 환경성과를 위한 자발적 지침, 또는 정보 및 전문지식의 자발적 공유, 시장에 기초한 인센티브 등이다.

6. 환경협의회 설치

협정문 제20.6조에서는 환경 Chapter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환경담당 관리를 포함하여 고위 정부관리로 구성된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를 설립 및 운영을 함으로써 환경협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환경협의회 운영방식은 제1차 협의회는 협정 발효일 이후 1년 이내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시 개최한다. 그리고 협의회 개최 시, 국가자문위원회의 견해 등 환경 Chapter 이행에 관하여 대중과 논의하기 위해 공개회의(Public Session)를 개최한다. 공개회의의 서면요약은 공개한다. 또한 협의회 의제 개발시 대중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대중참여 증진 모색 하며, 협의회의 공식결정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7. 대중의 참여확대

협정문 제20.7조에서는 환경 Chapter 이행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대

종 참여(민간조사요구제의 도입)를 확대시킴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였다.

8. 환경협력의 확대

협정문 제20.8조에서는 한·미 양국간의 환경협력의 확대와 강화를 위하여 환경 Chapter와 별도로 환경협력협정(AEC,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체결하고 구체적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환경협력위원회 구성 및 30여개의 신규 환경협력사업 추진을 합의하였으며, 환경협력협정(AEC) 서명은 한·미 FTA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9. 분쟁해결절차

협정문 제20.9조에서는 환경법¹⁶⁾의 효과적 집행의무를 위반하고 환경 Chapter상 협의에 의해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가능하다. 즉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에 실패하고, 한·미 양국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에 위반 한 것이 된다. 단,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미 양국은 부속서한 교환을 통해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 이전에 분쟁사안을 규율하는 환경법과 동등한 법이 자국에 있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토록 함으로써, 양국이 공통으로 규율하는 사안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그러나 지속·반복적인 환경법 집행위반에만 적용되는 등 분쟁해결절차 회부 대상이 제한적이며, 우리나라의 환경법 집행수준 및 현실을 고려할 때 현

16) 환경법의 정의 :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가능한 환경법을 의미(위임사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가능한 것으로 봄).

실적으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실제로 미국이 기체결한 FTA에서 환경관련분쟁해결절차가 발동된 사례는 없었다. 그리고 환경 Chapter의 여타 의무는 양국간 협의¹⁷⁾의 대상이며, 분쟁해결절차 회부대상이 아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추가협의에서 환경분쟁해결 특칙 대신에 일반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합의하였다. 이것은 추가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즉 환경 chapter상의 모든 의무를 여타 통상관련 FTA의 상업적 의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한 것이며, 또 이미 합의된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에서 7개의 국제환경협약(MEA) 이행의무 등 모든 의무로 일반분쟁해결 절차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분쟁해결절차 발동요건에 “무역·투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제20.2조)를 명시하여 분쟁남발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은 별도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¹⁸⁾

참고로 환경분쟁은 FTA의 일반분쟁해결 절차와는 달리 환경특칙이 적용되었다. 즉 환경전문가를 패널(panelist: 친환경적 판정가능성이 있음, 각

17) 환경 Chapter상 협의(Consultation) 절차 : 환경 Chapter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한·미 양국간 협의 진행(단, 협의 요청국은 서면으로 요청). 양국간 협의실패 시에 국가의 요청으로 환경협의회가 소집되어 협의,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 등 진행.

18) 환경 chapter 의무와 관련된 분쟁은 “국가 대 국가분쟁만 허용되며, 환경분쟁해결 특칙과 일반분쟁해결 절차는 모두 동일한 순서에 따라 분쟁해결이 진행된다. 절차 과정은 먼저 환경이사회를 통한 당사국간의 협의 → 공동위원회회의 협의 → 중재패널 구성 및 설치 → 패널판정보고서 작성 및 채택 → 당사국간 패널보고서 이행협의 → 판정이행 및 종결순서이다. 다만 당사국간 패널판정이행에 대한 합의실패 시에는 환경분쟁해결 특칙은 과징금산정을 위한 패널을 재소집하여 패널판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비해 일반분쟁절차는 제소국은 위반에 상응하는 무역상혜택정지(관세특혜정지 등)를 통보하고 배상액은 패널 판정액의 50% (패널판정이 없을 경우 제소국주장액의 50%), 그리고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승소국에 귀속된다. 이는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근간으로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 보도자료, 한·미 FTA 환경분야 추가협의 결과, 자료2, 2007. 6. 29.

국추천1명, 양국합의 1명 총 3명으로 구성됨)로 포함하며, 패널판정의 불이행시 연간 1천 5백만 불 한도의 과징금(smart penalty)을 부과하며, 과징금은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위반 당사국의 환경법규 집행의 개선 및 강화에 사용하며, 과징금 미납시 과징금에 상응하는 양허정지가 가능하였다.

10.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협정문 제20.2조와 제20.10조의 내용은 2007년 6월 29일 한미 양국간 2차례의 추가협의 끝에 합의한 것으로 한미 FTA 환경협정문에 다자간환경협정(적용대상협정),¹⁹⁾ 즉 7개의 국제환경협약(MEA)의 이행의무를 추가하고 의무위반시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토록 하였다. 또한 환경협정에 있어서 이는 어떤 다자 환경협정들이 환경보호에 있어서 전지구적·국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한·미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과 무역협정간의 상호지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기로 함으로써, 다자간 환경협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11. 환경법의 정의 및 범위

협정문 제20.11조에서는 환경 Chapter상 환경법은 인간·동물 또는 식

19) 부속서 20-가(적용대상 협정): 1.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 협정이라 함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아래에 기재된 다자간환경협정을 말한다. 가. 1973년 3월 3일 위싱턴에서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개정판) 나. 1987년 9월 16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조정 및 개정판) 다. 1978년 2월 17일에 런던에서 채택된 1973년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협약에 관한 1978년도 의정서(개정판) 라. 1971년 2월 2일 람사에서 채택된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개정판) 마. 1980년 5월 20일에 캔버라에서 채택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바. 1946년 12월 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제포경규제협약, 그리고 사. 1949년 5월 31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 2. 양 당사국은 그 밖의 다자간환경협정을 포함하기 위하여 제1항 목록의 수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을 의미한다. 단, 근로자 안전 또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환경법을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가능한 환경법으로 제한한다. 이로 인해 양국간 발생할 수 있는 대상 환경법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연방 환경법과 우리나라 중앙정부 환경법이 공통으로 규율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상의 환경협정문의 챕터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령개정의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바가 없으며 다만, 대중 참여방안중 상대국 소속 사인의 입장제출(Submission)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환경부내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다.

IV. 결어

한미 FTA 환경협정의 결과 그 효과에 대하여는 여전히 찬반의 논쟁이 치열하다. 즉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리라는 견해도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FTA는 당사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상품과 서비스 등의 교역량을 증대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증가로 인하여 자원이 고갈되고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통상협정은 주로 경제적 효용의 증대에 관심을 가졌을 뿐 환경보호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였다. 그런데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의 확대를 반영하여 최근 체결되거나 체결을 앞둔 대부분의 FTA는 환경보호규정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로 환경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효과적 환경법규 집행의무규정은 환경법규 위반자를 제재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경미한 제재에 그칠 경우, 상대방 당사국은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종국적으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FTA 당사국은 무역증대만을 위하여 환경훼손을 등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의 FTA와 다르게 환경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협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환경협력 규정은 한·미 양국의 상호 간에 기술과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민간참여제도, 상품의 환경기준, 환경보호수준의 약화금지의무규정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따라서 한·미 FTA는 환경보호를 강화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⁰⁾고 한다. 그러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는 한미 FTA의 환경협정내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예측하기가 어려움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들의 비판과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세밀한 대책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환경협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주제어: 한미 FTA, 환경협정, 분쟁절차, 다자간 환경협정

20) 이재형, “한·미 FTA와 환경”, 무역협회제공 연구보고서, FTA 국내대책위원회, 2006. 10 참조.

참고문헌

- 환경부 보도자료, 한·미 FTA 환경분야 추가협의 결과, 자료2, 2007. 6.
29
- 환경부의 보도자료, “한미FTA 환경협상결과 및 향후대책”, 2007. 4. 4
- 환경부, 보도자료, 2006, 6
- 관계부처합동, “한미FTA 상세설명자료”, 2007. 5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7. 4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index.html>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보도자료 참조. <http://www.fta.go.kr/user/>
- 한미 FTA 협정문 분석보고서4, “한미 FTA 환경분야평가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료집, 2007. 6
- 김철수, “環境權考”, 헌법논총 제6집, 헌법재판소, 1995
- 김영한, “한미FTA - 그 본질과 허상”, 철학과 현실(통권 제71호), 철학문화연구소, 2006. 12
- 박근수,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지역사회地(통권 제54호),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6. 11
- 이규용, “환경보전과 한·미 FTA 협상”, 아시아 경제신문, 2007. 7. 10
- 이재형, “한·미 FTA와 환경”, 무역협회제공 연구보고서, FTA 국내대책위원회, 2006. 10
- 전창환, “한미 FTA 협상 결정의 배경과 그 과정”, 동향과 전망(통권 67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6. 6
- 조은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3

Abstract

The Contents of Korea-U.S.A FTA
Environmental Agreements

Cho, Eun Rae

The government of the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cognizing their longstanding and strong partnership,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ir close economic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labor and environmental law and policies and to implement FTA Agreemen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ervation have agreed environmental agreement. Chapter 20(environment) is made up from article 20.1 to article 20.11 and ANNEX 20-A(covered agreements).

The contents of Chapter 20(environment) is levels of protection, environmental agreements,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 procedural matters, mechanisms to enha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pportunities for public participation, environmental cooperation, environmental consultations and procedure, relation to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definitions.

Key Words : korus fta, environmental agreements, dispute procedural,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